

WOW! 또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3.8 여성무지개 시위 2004

무지개포럼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

일시: 2004년 3월 6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대 의대 (대학로) 학생회관 제1강의실

주최: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후원: (사)시민운동지원기금, 서울대 여성학동아리 '움틈'

목차

[기조발제]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3	
전쟁은 가족을 부른다.....6	
장애여성에게 '다양한 가족'과 '평등한 가족'을 만들 권리가 있는가?.....11	
이성애중심적 가족주의 안에서 레즈비언 살아남기.....20	
배제되는 가족, 혼혈인 가족의 삶.....28	
[사례발표] 외국인과 산다는 것, 세상을 향한 빗장을 여는 것.....36	
[참고자료] 국제결혼가정차별실태와 해소를 위한 활동들.....38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소개.....42	

[기조발제]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

타리(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간사)

'가족'¹⁾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가족해체'에 대한 언급은 이미 진부해졌다. 사람들은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황혼이혼 등을 지적하면서 줄곧 가족의 해체와 붕괴를 걱정해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 배타성에 있다. 사회의 모든 제도가 소위 '정상적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때, 편부모 아이, 혼자 사는 여성, 레즈비언커플의 동거,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 장애여성들의 공동체와 같이 다양한 삶의 방식에 놓이거나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단순히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 쉽고 그러한 까닭에 그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당연하게도 사회적으로 가족이 누리는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만다. 지금의 가족해체는 기존의 가족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그대로 그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일 뿐, 이혼율 증가는 가족해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제도와 정책들 사이에서 길을 잊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정상가족 - 행복한 4인 가족'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있다면 그 정상의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가. 혹은 모든 사람에게 강요될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들의 그 작고 요상한 잣대로는 쟤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들은 단지 무시당해도 좋은 것인가.

부계혈통만을 엿는 가족제도, 모든 사람이 '부모'와 '이성의 배우자'와 '자신의 혈통인 자식'을 갖추어야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이성애 중심적 핵가족 이데올로기, 여성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건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강요되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가사노동과 양육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내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장애여성을 재단하는 비장애인중심의 문화, 여성과 미성년자를 남성가장으로부터 보호받는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그 안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철저히 은폐하는 가부장/군사주의적 사고 등 흔히 생각하는 가족의 이상 - '사랑이 충만하고 안식을 얻는 가족'과 현실의 가족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는 이러한 간극이 결국 누구에게 가장 고통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관한 신화는 누가 왜 계속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평등부부 캠페인이나 소위 평등하고 현명한 육아, 간헐적인 사회복지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그동안 가치관의 변화,

1) 현재의 '가족'을 낯설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의 이름이 무엇이 되든 그 것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가족'으로 부른다면 이 발제문의 쓰인 '가족'이란 단어는 모두 따옴표가 필요하다.

경제구조의 변화 등 사회변화와 연동해서 변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담론은 주류적인 가치의 입장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내려진 특정한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이러한 담론은 법제도화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기존의 정상적인 가족 시스템을 최대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들 - '부부의 날'과 '건강가족기본법' 등 -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명목상 양성평등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은 부부중심의 핵가족이다. 이혼율이 높아져서 이혼가족이 늘어나자 이혼가족의 부모나 자녀가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장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호주제 폐지 담론에서 일부 여성계의 주장의 것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혼가족이 정상가족처럼 살도록 돋는 것이 온전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데에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수위의 '다양한' 가족의 범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혼가족의 '결핍에 대한 보상 혹은 보완'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혼가족' 자체를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할 수 있을 때만이 다양성의 문제를 단일한 시각에서 판단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양성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다양성을 말한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가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삶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다양성을 가치가 아니라 현상으로 파악하는 현재의 시각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이성애결혼제도 밖에 있는 삶의 형태들을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도가 말하는 가족의 중요성과 다양성은 "핵가족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주겠다는 기존의 선가정 후복지의 입장과 달라질 수 없다" 2)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가족'제도와 문화는 '이성'간의 '결혼'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 가족에 관련된 보살핌노동과 헌신을 당연시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든 구조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족제도는 남성(부계)·이성애·비장애인 중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을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다양한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은 자고로 가족 안에서 태어나 가족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한 이후에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꾸려서 재생산을 하여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도리이다'는 말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덮어둠으로써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재생산 해왔다. 실제로 가족 안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없고, 결혼제도를 거치지 않는 한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재생산을 하지 못/안하는 경우 특히 여성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또한 그것이 도리라고 말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신화가 된다. 그러나 가족문제는 계급, 성별, 장애, 성정체성, 국적, 인종 등과 같은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영역이며 보다 섬세한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안적 상상력

2 이박혜경, "건강가정기본법 모순 많다", 여성주의저널 일다 2004년 1월 26일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거나 다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주변화 된 여성의 삶, 소수자 여성들의 삶을 가족의 문제와 관련지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이미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차별과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당연하게도 아직 들어야할 경험과 존재들간의 차이들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삶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가족주의의 문제점을 철저히 짚으면서 아직 본격화되지 않는 논의를 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장애여성, 여성성소수자, 혼혈인,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은 각기 삶의 방식과 가족에 대한 입장이 다르며, 각 집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교차하고 있을 것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들은 각각의 개인과 집단이 처한 현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인권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개인과 집단이 원하고 요구하는 삶의 형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할 시각을 함께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관점과 현실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것, 그것에 기반해 상상력을 풀어내고 해석해 내는 것이 '소수자운동'의 정치라는 생각이 듈다.

전쟁은 가족을 부른다

진경(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간사)

-왜 '전쟁'과 '가족'인가

요즘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태극기 휘날리며>가 화제다. <실미도>에 이어 관객 1천만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되는 이 영화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빠져드는가?(이 글에서 영화 자체의 완성도와 기술적 성과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태극기 휘날리며>는 가장 극적인 상황(전쟁)에서 한국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가족애)를 그려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전쟁과 가족인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결합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쟁과 가족은 언제나 '함께' 이야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인식되지 않았다. 특히나 한국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한국사회는 언제나 전쟁-가족의 연결고리에 민감했다. 그 연결고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처', '슬픔', '비극'과 같은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려고 했을지언정 다른 부분들을 고민하거나 비판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전후 세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지점이 많다고 여겨진다) 동시에, 다른 문제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여성/소수자들이 경험한 폭력이나 억압스러운 개별적인 상황들이 -'민족의 아픔'이라는 커다란 명제 하나로 묶여지면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본의 침략과 그로 인한 식민지 시기, 한국전쟁과 남북의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면서 한국 '국민'들은 늘 불안했고 좀 더 강한 국가를 원했다. (군사적으로) 막강한 국가가 자신들을 (적으로부터)보호해주기를 바랬고 이 것은 군사안보의 우선시, 정당화를 가져왔다³⁾ 그러면서 한국은 점점 군사화된 지역이 되었고 군사주의 문화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군대, 안보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남성'에게만 주어졌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해야만 했다. 군사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은 신성화된 영역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역으로, 전쟁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것은 군사주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에 기여하기도 했다. 전쟁의 실체나 그것의 명분을 둘러싼 허구성을 밝히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탈군사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명분론, 국익론, 안보론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의 전제와, 그것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을 비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군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3) 앤 티커너, 「여성과 국제정치」,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66p "국가는 계속해서 국가정당성의 많은 부분을 국가의 안보에 대한 역할에서 끌어내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시민들은 때로 아무런 의무 없이 희생을 하려고 한다"

군사주의는 기본적으로 '적'을 상정하는 배타성에서 기반 한다⁴⁾ 중요한 것은 결국 '내편(우리편)'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가족주의가 담고 있는 배타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상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비정상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울타리를 공고히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영화<태극기 휘날리며>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족이데올로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전쟁과 남성주체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진태, 진석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진태의 약혼녀와 그녀의 많은 동생들은 그 당시의 전형적인 (대)가족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장남인 진태가 가(부)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형은 가난한 집안 형편에 구두닦이를 하면서 공부 잘하는 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뒷바라지를 하고, 어머니와 약혼녀, 그녀의 동생들을 돌본다. 모든 식구들이 그를 의지하며 가족의 행복은 두 형제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자 군대에 끌려가게 된 진태는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서슴지 않는다. 아들을 돌려보내려고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아버지처럼, 그도 무공훈장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영웅이 되어 간다. 진태는 소대원들의 자랑이 되고, 대대장의 신임을 받으며 남성주체로서 자리잡게 된다. 이것은 '사내다움'을 가진 남성이 전사가 되어 가는 과정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는 비로소 일등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며 점점 명령하는 위치에서 적을 공격하고 부대를 지휘한다⁵⁾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진태의 모습은(그의 의도와 다를지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애국자'로서의 모습과 겹쳐진다. 동생을 비롯한 그의 가족의 안전이, 그가 포함된 부대의 안전이, 나아가 남한의 안전이 그의 손에 달린 셈이다.

영화는 시종일관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적인 계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영화 초반, 아버지 제삿날에 진태는 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돌

4) 김엘리, '전쟁과 여성', 월간『살림』(아우내재단 미래문화연구원), 2002년 3월호, "전쟁과 군사 주의는 '우리'와 다른 '타자'로서의 적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타자'는 '우리'의 부정어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확인된다. 따라서 적은 하나의 대상으로 비인간화되면서 짐승이나 악마로 선전되고, 그 이미지는 '우리'가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5) 앤 티커너, 「여성과 국제정치」,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63p "일등시민이 된다는 것은 전사가 되는 것이다. 국가는 남자(전사)에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결정적인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된다."

아가신 아버지에게 부탁드린다.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는 아예 제사가 치러지는 방 문 밖에 나가 있다) 같은 소대원인 영만은 ‘한 가족에 남자 한 명씩만 징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두 형제가 같이 온 것을 보고 “그러면 ‘제사상’은 누가 차리냐는 거라”면서 개탄한다. 그리고 형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영만이 죽게 되자 동생은 형을 비난한다. 형에게 영만의 아들 이름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처럼 아비 없는 애가 되어서 우리를 원망할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진태는 몸을 바쳐서 진석을 보호하는 위치로 그려진다. 그는 유서를 쓰라는 종이를 받아들고 두려워하는 동생을 달랜다. 진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인한 모습을 유지하며,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책임감을 놓지 않는다⁶⁾ 진석 뿐만 아니라 그의 약혼녀 영신을 비롯한 가족을 보호하는 모습은 부각된다.(영화 속에서 진석이 진태에게 따지듯이)하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영신이 ‘빨갱이’로 몰리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구하려 갔을 때도 그는 약혼녀의 ‘순결’에 대해 의심을 하며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 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기준에서 정하고,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이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차없이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보호자’ 들이다.

-어머니와 여성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은 진태,진석 형제의 어머니와 진태의 약혼녀 영신뿐이다.(한국에서, 특히 전쟁상황에서 여성은 어머니와 아내, 누이 밖에 될 수 없다. 그들의 위치는 관계 맺고 있는 남성에 의해 정해진다) 이들은 전쟁터에 보낸 아들, 남편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열병으로 인해 말을 못하는데 이 것은 전쟁터에 두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녀는 아들을 둘 다 군에 보내고 걱정이 되어 쓰러지는데 이럴 때 어머니를 보살피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또 다른 여성(집안의 며느리, 미래의 어머니)인 영신이다.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국수가계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쌀 한 틀이라도 더 얻으려고 부지런하게, 헌신적으로 살아간다.(결국 이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된다) 전쟁 생활에서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이 전장에 나가있는 동안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여성들에게 중요한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⁷⁾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남성들의 몫이며, 또한 전쟁이 끝나면 일하던 여성들도 그 자리를 다시 남성들에게 내주어야 한다.

영화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 상황에서 어머니는 수동적인 피해자인 동시에 가정을 다

6) 앤 티커너, 「여성과 국제정치」,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61p "병사는 반드시 보호자(protector)가 되어야 한다. 병사는 반드시 용기, 강인함 및 책임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두려움, 취약성 및 동정심의 감정을 억제해야만 한다"

7) Keo Keang, 'Cambodian women in armed conflict situation', 'Common grounds', "캄보디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자는 군대를 갔고, 여성은 가족이나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모순적으로, 많은 커뮤니티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더라도 여전히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힘과 결정권을 가지는 포지션은 남성이 차지한다."

시 일으키는 역할을 맡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인다. 그렇게 돈을 벌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여성은 가족의 모든 짐을 떠맡게 되는 셈인데도 그것은 언제나 '모성'으로 승화시켜서 그려진다. 그러나 그러한 '모성'은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 의한 환상일 뿐 현실에서의 어머니는 고통스럽고 괴롭다⁸⁾

전쟁시에는 여성에 대한 이분법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자국의 여성/정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적의 여성. 적의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그 민족,나라의 여성의 몸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성폭력이나 집단강간은 병사 개인의 성적 충동에 의한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군,국가 전체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이며 범죄다. 반대로, '우리' 민족의 여성은 언제나 순결해야 하며 깨끗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영신은 죽어 가는 순간에도 "저는 진태씨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순결을 확인시킨다. 그녀가 치맛감을 잘라서 만들었다며 진태에게 건넨 손수건은 그들의 사랑의 매개체로 보이지만, 실은 영신의 가족에 대한 맹목적인 혼신과 순결의 상징이다.

-위기상황과 가족

전쟁의 보호담론은 또 다른 위기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재현되고 있다. IMF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그 만큼 공고해졌다.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의한 위협에 직면하자 한국은 '자국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위기가 닥치면, 집단은 "뭉쳐야 산다"는 논리 아래, 동일성을 강조하며 그만큼 외부에 대해, 다른 것에 대해 더 배타적이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민족=국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며(한민족은 종종 '가족'으로 이야기되고, 남북은 형제 관계로 비유된다. 국가-국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설명하는 예도 흔하다) 그토록 가족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다.

'가족해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요즘은 언론, 문화, 정치계 등 전 사회적으로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내세우며, 어떻게 하면 가족을 뭉치게 할 수 있을지, 그 끈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고 있다. 물론, 이 때의 가족은 소위 '정상가족'을 이야기한다. '정상가족'을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비정상가족'을 해체시켜서 정상가족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이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비정상가족'을 비난할수록 '정상가족'의 가치는 특별하고 우월한 것이 된다.

국가안보의 정당성이 외부의 적을 상정하면서 내부적인 안전성을 전제하는 것처럼,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가족 내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게 한다. 하지만, 레즈비언이, 장애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아주 여성이 과연 가족 내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소수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받는 차별

8)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50p "이러한 서사화에 의해 모성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자기 혼신과 사랑을 통해 현실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가치의 세계로 신화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화의 과정은 현실의 어머니의 고통을 사랑과 혼신으로 승화된 모성의 표상을 통해 지워나가는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과 역압을 드러내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가족은 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그 내부의 폭력은 언제나 가려져 왔다. 그러나 그렇게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이 전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보여지는 전쟁은 말 그대로, 협소한 의미에서의 '전쟁 상태' 일뿐이다. 대부분의 전쟁영화나 사진들을 통해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영화를 보고 전쟁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것 이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때의 '공포'는 단지 전쟁 상태, 전시 상황에 대한 공포일뿐이다. 오히려 이러한 영화 혹은 사진, 소설 등은 전쟁을 일상과 동떨어진, 아주 특수한 형태로 그려내면서 전쟁/일상의 구분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만다. 이럴 때 전쟁-일상의 연결성을 흐릿해지며 아예 반대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한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전쟁이 끝나면 마치 평화(일상)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일상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소수자들이 느끼는 일상적 차별과 폭력은 전쟁과 같은 군사적 위기 앞에 너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급성의 논리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시킨다. 다급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 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게 되고, 개별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기 쉽지 않다. 이 것은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소수자들의 인권은 하나의 이슈일 뿐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전이나 파병반대의 담론이 추상적이고 거대한 것일수록 일회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로울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하지 않았다.(빼앗긴 것이다) 안전하다는 것이 국가로부터의 보호 속에서 사는 것, '따뜻한' 가족의 올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경제적, 법적, 사회적 조건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안보에 대한 개념도 재정의 되어야 한다. 평화가 단지 전쟁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당연시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정상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통해서 정상/비정상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 때 개인이 평화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일상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가족’과 ‘평등한 가족’을 만들 권리가 있는가?

박영희(장애인공감 상임대표)

시작하며

지하철의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중에 점잖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부모님 계시우?”하신다 “네”라고 대답하자 “그러니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하신다.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는 말한다. “위험하게 왜 보호자도 없이 다녀요?” “아저씨도 밖에 다닐 때 보호자와 다니세요”라고 대답한다.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내가 집을 나와서 같은 장애여성들과 살고 있고, 내 몸을 내가 챙긴다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고, 또 부모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 도와주기 때문에 단정하게 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장애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자신의 삶에 지지와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인가?’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동의 할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장애여성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장애여성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들이 그녀들의 삶을 깊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의 이면에는 ‘전동휠체어로 혼자 이동하는 장애여성의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여서 왜 보호자 없이 나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말처럼 사회적으로 비장애인들의 의식에 장애여성은 길에서 엄마를 잃고 혼자 어린아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의식들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장애여성의 가족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여성은 가족 안에서 자기 삶을 주체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히 가족에게 의존적 존재로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며 살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인식하듯이 장애여성은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인가? 왜 장애여성은 만년 소녀로 인식되어지고, 가족들에게 영원히 부양되어져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지는가? 장애여성에게 혈연 가족이 안전한 보호와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또한, 우리의 비장애인중심, 남성중심의 구조 속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의 몸으로 기본적 권리 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장애여성이 자기 삶에 대하여 주체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인 결정권이 있을 수 없는 이유들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이 자기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양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가질 것이며, 무엇 보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왜곡된 인식 전환과 이에 따른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 따른 정책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해보려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여성이 독립된 존재로 인정되어지며, 다양한 가족을 선택할 권리, 또 자유롭게 가족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 말하려 한다.

1.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엔에서는 장애인의 수를 그 나라 국민의 10분의 1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450만 장애인 중에 장애여성은 50%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으나 5년마다 실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은 1,449,496명이었고 이 중 장애여성은 559,06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 장애여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여성기보다 성이 없는 존재 즉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살아왔다. 여성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가사, 보육, 성, 남성에게 각종 서비스)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여성들은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여성의 해내야 하는 역할인 남성의 내조자로서의 성적 제공과 가사전담과 출산에 따른 육아보육 등을 해내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여성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또한 사회는 상업적인 여성의 몸을 더 강요되어 지고, 그러한 '아름다운 여성의 몸'과 거리가 먼, 장애 있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이라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무성적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이미지와는 달리 장애여성의 성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모순적 현상도 있다. 이것은 바로 장애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는 사회 정화적인 천사 모습에 만년 소녀적인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어 언제나 존중을 못 받을 뿐더러 장애여성의 의사표현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놓여짐으로 다양한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한 예로 장애여성에 가해지는 성폭력을 들 수 있다. 장애여성을 가해하여도 정신지체여성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또는 지체장애인은 좁은 인간관계로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가해자들의 사고가 장애여성을 끊임없이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2. 교육과 경제 활동으로 나타난 장애여성의 현실

장애여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2000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8%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다. 남성장애인(41.4%)과 비교해 볼 때, 장애여성들이 현저하게 낮은 학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장애여성의 학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애를 가진 딸을 힘들게 공부시킨다 해도 비장애인 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에 끼어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회박성 때문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장애 때문에 학교에 접근 할 수 없는 많은 현실들이 있다. 우리나라 정규교육의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편의시설 부족과 이동문제, 또한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장애

유형에 맞는 교육과정의 부족과 장애아와 비장애인을 구별하여 교육하는 차별의식으로 인하여 중요한 통합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찾아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과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의 희생이 요구된다. 특히 어머니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딸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사회에서 집 앞을 나설 수조차 없는 장애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이러한 것은 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교육의 현실이 장애여성이 성장해서도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판매, 서비스직(33.3%)이며 생산, 노무자(25.5%) 취로사업(22.5%)로 나타난다. 근로형태로는 일용직 근로자가(29.1%)로 가장 많으며 자영직(17.4%)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만원 이하가 59.4%로 과반수를 넘으며 100만원 이하까지 합하면 전체의 86.8%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 50만원 이하 저임금은 특히 정신장애(85.7%),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71.4%), 뇌병변(70.0%)보다 높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장애여성이 교육의 부족과 취업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악순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이나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통계로 보여지는 것은 가시적일 뿐이고 현장에서의 장애여성의 현실은 더욱 척박하기만 하다.

3. 장애여성과 가족

장애인의 생애에 있어 두 가지의 가족형태를 경험한다.

장애인은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혈연 가족과 본인의 선택이던지 아니던지 결혼, 동거, 공동체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살아간다. 이것에 따른 장애여성 가족의 다양한 현실들을 알아볼까 한다.

1) 장애여성과 혈연가족

위와 같은 사회적 현실이 장애여성의 가족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가족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가족이라는 사회적 기준으로 보는 건강한 몸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혈연가족 구성은 장애여성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정상적 기준의 혈연가족으로 인해 장애 있는 몸을 가진 딸은 목소리가 묻혀지기 쉬운 상황에 놓여진다.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딸로 태어나게 되면 그리 반가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특히 아들을 기다리다가 태어난 장애여아라면 그녀의 운명은 어떠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한 가정 안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교육과 재활과 사회화는 온전히 가족들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딸에 대한 지원을 가족들이 담보해내지 못하면 장애여성은 결국 가정 안에서 고립되고 방치 되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여성을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살수밖에 없도록 한다. 더욱이 장애여성이 학력이 낮거나 장애가 중증일 경우엔 가족 안에서 조차 소외되어버린다. 장애여성은 장애가 중증일수록 가족 안에서 자기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가족들이 집에만 있는 장애여성의 판단이 미숙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장애여성이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가족은 인정하지 않아 장애여성의 목소리가 없어진다. 이러한 차별들이 쌓여가고 깊어갈 수록 대응력 없고, 선택권 없는 장애여성은 고스란히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의 초경을 하게 될 때,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여자구실도 못 할텐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 장애여성은 자신이 여성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장애여성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처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정신지체여성이 성폭력의 파를 임신에 대한 예방으로 아예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장애여성의 성을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생리처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거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귀찮고 필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장애여성은 가족들에게 소외와 억압과 결정권 없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장애여성은 가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몸이 되면 가족들의 가사를 전담하게 되지만, 그려함에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되어진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장애여성을 관리하려 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무시와 소외와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혈연가족에게서 당하기도 한다.

2) 장애여성이 선택하는 가족

▶ 결혼

▷ 사례: 영순(가명 35세 지체1급 뇌병변)

늦게 결혼을 하게 된 영순씨는 장애가 중증이다. 연로해지는 부모님을 보며 자기는 누구와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경증 장애가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영순씨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다. 시가 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을 때 시부모님은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로 장애를 가진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하였다 ‘아이를 낳아야 할텐데 기형아를 낳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설사 정상적인(시부모의 말을 그대로 한다면)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남편 밥은 어떻게 하고 집안일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영순씨는 힘겹게 결혼은 하였지만 시가에서 불만스러움은 그대로 영순씨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선택뿐이다. 그러나 장애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가 중증일 경우 더욱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연애의 기회조차도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이 장애로 인하여 기형아를 출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장애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공포를 만들기도 한다. 또 장애에 대한 의료적 무지 때문에 장애여성은 본인이 출산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찰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식은 장애여성의 결혼에 대한 부담 중에 하나가 되기

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여성은 여성으로서 수행해야 할 성역할에 대한 부담이 있다.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주어지는 역할은 출산, 가사, 육아, 성제공자의 역할이다. 장애여성이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들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을 수행할 수 없는 여성은 여성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종 장애여성은 이러한 것을 수행해내지 못함으로써 결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장애인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던 엄마가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역시 가족들은 장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엄마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수행해오던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가족에게 혼란이 온다. 여성이 수행해오던 성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특히 남편은 견디어 내지를 못하고 장애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장애여성의 말들은 무시되어지고 시가와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다.

결국엔 장애여성에게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가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아버지가 기르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장애여성에게는 모성권마저 빼앗겨 버리게 된다. 장애여성에게 성역할이 강요되는 것은 TV프로그램 중에서 집을 고쳐주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장애남성에게는 컴퓨터작업 방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장애여성에겐 부엌과 다용도실 빨래를 잘 말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맞는 일일까?

이렇게 여성에게 부여되는 성역할은 장애여성에게도 똑같이 부여되며, 이것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가족관계에서부터 불평등하게 만들어진다. 그러한 불평등이 장애여성을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결혼에서뿐만 아니라 혈연 가족관계에서도 가정 폭력은 발생하지만 결혼관계에서 장애여성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결혼제도가 장애여성에게는 불평등을 더 연속시키는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다시 가족으로부터 장애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언제나 만만하고 손쉽게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 무시와 차별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 장애여성들이 폭력을 당하여도 현재 피해장애인성이 피할 수 있는 쉼터도 없다.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어머니와 자매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장애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당장 그녀를 위한 어떤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여성에게 결혼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성에게 부여되는 성역할이 없어져야 한다. 장애여성이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 성역할 때문에 불평등 상태로 놓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혼은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던지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에서 얼마나 서로를 지원하며 가족공동체를 이루었는가이다.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환상도 깨어나가야 한다.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쪽이라도 불평등한 관계로 이끌어나가는 가족관계는 이제는 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여성에게는 서로 존중되는 결혼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적 결혼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여성 스스로도 결혼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매스컴에서 비장애인 남성을 만나 결혼하여 남편의 보살핌을 받고 사는 장애여성이 성공한 삶, 행복한 장애여성이라는 수식은 장애여성이 결혼에 대한 선망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고 일방적인 관계와 불평등한 관계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없다.

결혼은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깊은 의식이 필요하다. 장애여성 스스로 자기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겠다.

▶ 동 거

▶ 장애여성에게 과연 결혼제도에 반대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동거가 가능한 것일까를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장애여성이 어느 정도 동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는 어디에서고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애여성의 동거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애여성공감이 그동안 활동하는 가운데 상담을 통해서 또는 만나게 되는 장애여성들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장애여성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삶의 주체로서 동거를 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장애여성에겐 동거가 낯선 것은 사실이다.

동거를 하고 있는 장애여성들 중엔 정상적인 결혼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머물기 위한 기간으로 동거를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장애여성들이 늘 동거인이 변심할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여성은 동거인과 평등한 관계가 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의존적이 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여성은 결혼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없음으로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가족들에게 감추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또 하나 장애여성의 동거를 비장애인과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회적 시선이다. 장애여성의 동거는 사회적으로 일정정도 판대하게 봐주기도 한다. “시가 쪽에서 반대를 해서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가보다.’ 또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결혼제도가 주는 불평등을 거부하고, 또는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장애여성이 동거를 결정 했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어디에서고 장애여성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여성 레즈비언의 동거라고 해도 아마 일반적으로 상상도 안 되고 인정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일 경우는 장애인들끼리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장애여성과 비장애인 여성일 경우 비장애인성이 장애여성을 돌보며 사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비장애인은 천사같이 착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반면, 동거인과 헤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장애여성은 버림을 받았고, 상대는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린다. 몸도 성하지 않은 여자를 버리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기준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장애여성은 누구와 살아도 여전히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지고, 장애여성은 결정권이 없다.

▶ 공동체/그룹 홈

▶ 대부분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을 공동체라고 한다. 이 곳은 대부분 비장애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

또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정신지체장애인들을 한 가정에 사회복지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곳은 장애인 수용시설과 달리 기독교적인 목적의식이 있는 곳이 있고, 또는 별다른 목적을 두지 않고 사설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은 장애여성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장애여성은 자유로운 활동보다는 내부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후원인들에게 시혜와 동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 역시 장애여성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 있다.

4. 결정권을 가지기 위한 현실적 제언

위와 같이 장애여성이 선택 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몇 가지를 보았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든 장애여성이 평등하게 가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었다. 그것은 이미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지워지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장애여성에게 맞는 시스템이 주어지지 않고는 장애여성에게 자유로운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여성이 스스로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제언들을 만들어 보았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장애여성도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만들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장애여성도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에게도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다. 장애여성의 결정을 그 누구도 평가 할 수도 없으며 가치절하해서도 안 된다.

장애여성은 스스로 가족을 만들 권리가 있고 또 안 만들 권리도 있다. 혼자 독립적으로 살 권리도 있고 결혼할 권리 동거할 권리도 있다. 그러함에도 지금 사회는 장애여성의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를 않는다.

현재 사회에서는 성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행은 온전히 장애여성의 억압의 짐이다. 이젠 성역할이 여성의 뜻이라는 것을 탈피하여야 한다.

성역할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남, 여가 함께 해야 하고 여성에게 더 이상 억압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에게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정보접근권과 연금법 등 사회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제언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 본인의 현실을 더 강화하라.

▷ 사례: 정숙(가명, 40세, 소아마비 지체1급)

정숙씨는 간절히 가족에게서 독립되길 원했다.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중증장애인이고 개인적으로는 경제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부모님의 재산정도가 자격조건에 걸린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그녀는 수급권자도 못 되고 장애수당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족은 정숙씨가 왜 독립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가족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는 정숙씨는 독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기초법 안에서 가족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중심의 정책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이다. 이것이 장애인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부터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여성이 원하는 독립에 따른 경제보장을 위하여 가족과 연계되어 있음으로 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기초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 임대 아파트 입주시, 세대주가 다른 장애여성도 한 가족으로 함께 입주하게 하라.

▷ 사례: 장애여성 세 명이 살고 있다. 셋 다 중증 장애인이다. 큰언니가 기초법 수급자이다. 그래서 영구임대 아파트 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였다. 물론 셋이서 함께였다. 그런데 세 사람은 가족으로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제도가 가족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여성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한다면 세대주가 다른 장애여성들이 모여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장애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활동보조를 제도화하라.

▷ 중증장애인여성이 독립을 하자 하여도 현재 사회적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여성의 독립과 활동에 있어 중요한 장애인 중심의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중증장애인여성은 일상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독립된 삶의 결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개인별 등록제를 실시하라

▷ 사례: 나는 독립을 하면서 호적분가를 했다. 당장의 경제적 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미 단독호주가 되어 있는 나의 호적을 보지 않고 부모님과 결혼한 남동생(아버지의 호주승계자로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의 재산 정도 조사가 있었다.

가족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호적분가를 결정했던 나의 의지가 무색했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그 안에 소속된 가족을 둔다. 따라서 호주를 제외하고는 호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규정된다.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복지제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호적분가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가족관계 안에서 나의 신분과 능력을 파악하려는 관습이 존재한다.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을 논의 할 때 제시되는 제도는 당연히 개인과 가족간의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 현재 장애여성을 수동적인 보호자로 여기는 문화가 팽배한 이상 호주만 없어 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점은 거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장애여성은 현재 호주제 폐지로 기대되는 양성평등의 주체가 아니라 장애여성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여성은 가족제도 안에서 부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현재는 부양관계를 가족 간의 사랑과 의무로 강제함으로써 복잡한 현실과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있다. 일정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마련할 때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 코디네이터를 제도화 하라

역할: 성차별, 장애인 재인식, 중도장애인, 장애아, 임신(상담과 정보 제공)

▷ 장애여아가 출산했을 때, 또는 중도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여성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장애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무척 당황스럽다. 그것은 장애로 인한 모든 책임이 온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여아는 방치되고 장애여성은 가족과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입장과 중심에서 장애가 공포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과 사회적 정보를 전달하고 가족들이 서로 잘 융화하기 위한 지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과 노동현장에서 장애를 잘 완충시켜주는 역할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여성은 어려서 성차별을 당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이상으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듣다면 장애여성이 다양한 가족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 하였을 때, 그것이 장애여성에게 얼마나 자유로운 결정이었으며 가족을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가이다.

장애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족은 더 이상 차별과 억압을 주는 사람들이 안아야 하며, 더 이상 장애여성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아야 하고, 제도적, 사회적 무관심으로 가정의 깊은 곳으로부터 장애여성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장애여성의 자유로운 가족에 대한 선택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 결정이 인정되고 존중되길 바란다.

이성애중심적 가족주의 안에서 레즈비언 살아남기

케이(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간사)

들어가며 ? 걱정되는 지점들.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유별날 것 없는 스물 네 살 레즈비언이 이러한 글을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 겪지 않은 경험의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겪어봐야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스물 네 살의 나이가 갖는 경험의 한계라는 것은 일정 부분 명확한 것이다. 스물 네 살의 레즈비언은, 그 전후 연령 대 레즈비언들의 현재적 경험을 직관적으로 예상하고 그 상황에 이입은 할 수 있으되, 그 구체적인 삶의 결들을 모두 섬세하게 짚어낼 수는 없다. 다양한 방식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레즈비언들의 생각과 소망을 모두 파악할 수도 없다. ‘난 다 알아’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다만, 노력할 수 있을 뿐. 서투르게 넘겨 짚거나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스스로 우리의 입을 막는 일만은 피할 수 있도록.

살아남기

레즈비언은 ‘살아남아야’ 한다. 레즈비언은 매 순간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기에,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며 너무 많은 것들과 싸워나가야 한다. 여기서 사용한 ‘생존’ 이란 단어는 결코 문학적인 수사나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언어다. 이성애자들이라면 아무도 주의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신경을 기울이는 행동들, 레즈비언들은 그러한 것들을 쉼 없이 계속해야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지낼 수 있다. 여기서 레즈비언의 ‘안전’ 을 ‘보장’ 하는 주체와 그것들을 쟁는 잣대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친 이성애중심적 분위기를 하루 아침에 당장 변화시킬 수가 없다면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 남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은 동성애자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이다. 한 레즈비언은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의 정체성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두 가지 정체성은 한 개인 안에서 끊임없이 뒤섞이며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 사회가 동성애 혐오가 만연한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이자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사회라는 사실은 매 순간 레즈비언들을 숨막히게 한다. 레즈비언 자신에게 내재된 동성애 혐오로 인한 자궁심 하락, 사회적인 존재감이 뚜렷한 레즈비언 역할 모델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고립, 또래 집단과 가정 그리고 교육 과정으로부터의 배척과 소외의 경험,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각종 대(對)동성애자 혐오 범죄, 동성애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의 전무함 등은 레즈비언들이 고군분투하는 인생의 곡선을 따라가며 거듭 레즈비언들의 목을 조른다.

레즈비언은 곁으로만 보기에는 남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건 정체성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한 특별한 무리 없이 어울려 지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레즈비언들이 굳이 비정상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 당하지 않을 방법도 없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성애만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커밍아웃 하지 않는(못하는) 레즈비언

은 당연히 이성애자 여성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레즈비언의 경우 온전한 자신으로서 타인들과 관계 맷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 수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야 하는 숱한 상황들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레즈비언에게 심리적인 박탈감과 관계망 내부에서의 위축감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커밍아웃을 맘놓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당연히 아니다. 많은 수의 레즈비언은 아마도, 커밍아웃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편견의 시선과 물리적 불이익을 택하기 보다 차라리 입다물고 이성애자로 가장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성애중심적 가족주의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정상 가족 형태로 여겨지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뿐히지 못한 호주제를 축으로 하는 부계 혈통 중심의 가계도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문 승계 질서에 엄청난 당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 부합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공동체는 항상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비정상으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4인 핵가족의 모델에서 벗어난 형태의 가족들이 숱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애 결혼에 기반한 핵가족 모델의 정상 이데올로기는 매우 강력하여 사람들의 사고 방식 역시 그것에 전적으로 지배당한다. 단적인 예로,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은 모두에게 여전히 너무 자연스러운 어휘이다. 이 사회적 통념은 정상 가족 모델과는 다른 삶을 영위해 가는 이들 스스로 조차 자기 자신을 궁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할 만큼 심각한 정도이다. 필요 없는 박탈감과 결핍감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이런 식의 핵가족 형태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몸’과 ‘정신’을 가진 성인 ‘이성간’의 결혼 계약이라는 점이다. 즉, ‘이성 부부’가 정상성의 골자인 것이다(정상 가족 형태가 내포하고 있는 이 외의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 포럼의 다른 발제들을 통해 독립적으로 접근된다). 결혼을 매개로 한 성인 남녀의 결합이 사회 구성원의 안정적 재생산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부과되는 중요성은 그 중요성의 무게만큼,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상시적으로 가해지는 편견의 시선과 비난의 강도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흔히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에도 묻어 나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시집 안 가니?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지만 그제서야 어른이 되는 거란다, 쫓쓰.”

흔기가 찼는데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그 자신의 선택권 그리고 실제 그 자신이 획득하고 있는 경제력 등과 무관하게 어딘가 미흡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것은 여성에게 부과된 고정된 성역할이라는 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하여 가정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끔 강제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지탄의 말을 던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맥락의 기저에는 여성과 남성의 교제와 결합만이 올바른 것이라는 판단이 도사리고 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 이외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꽉 막힌 이성애 중심주의라니.

“이성애자들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아이 양육 하느라 등골 휘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권리 운운식이나 하니 참으로 볼만하구나.”

동성애와 관련된 온라인 논쟁 등이 불을 때면 이와 유사한 말들이 게시판에 지천으로 깔린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대놓고 직접적으로 ‘변태’, ‘비정상’, ‘사회의 암적 존재’,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파렴치함’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딴에는 보다 세련된 논리 구성을 통해, 동성애자를 권리에 대해 발언할 가치도 없는 부적격자로 몰고 있는 종류이다. ‘권리를 가지려면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성애자들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여기서의 ‘의무’라는 것은 이성애 결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쓰이는 눈가리개 수단에 불과하다. 이성애 결혼이라는 형태가 자동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것 역시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부부가 차츰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기준’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줄 모르거나 그렇게 하길 기피한다.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는 가치나 원칙이 사실은 틀린 것이라거나, 완전히 틀리지는 않더라도 꽤나 애매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그건 다소 공포스러운 각성의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발을 딛게 해 주던 단단한 지반이 미미하게 혹은 정도에 따라 극심하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일 테기 때문이다. 당연한 건 끝내 당연히 그런 것으로 남아 있기를 대다수가 바라는 것도 그러한 맥락과 닳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성애중심주의’라는 단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낯선 뉘앙스일 확률이 높다. ‘이성애’라고 굳이 따로 명명하는 것부터가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이성애 ‘중심’ 주의? 그렇다면 다른 무엇들이 존재한다는 건가? 대체 무엇이 또 존재한다는 건가? 이성애라는 건 지극히 ‘보편’ 적인 것인데?”

하지만 예를 들어, 레즈비언들에게는 이성 결혼이 당연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이다. 레즈비언들이 ‘(기준 의미의)결혼’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 그건 바로 끊임없이 이성 결혼의 당위를 주입 받고 또한 강제 당한다는 측면에서만 그러하다. 상황이 이러할 때, ‘이성교제’ 와 ‘이성결혼’ 만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말들은 레즈비언들의 실제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의 존재는, 이성애가 실제로 당연하고 권장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만 모두가 따라야 하는 지상 명령인 것처럼 포장되고 유포되고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반증해 준다.

최근에, 이성애의 정상성은 정말 강하고도 강하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각인돼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며 황망했던 적이 있었다. 뻔히 눈 앞에 그 자리에서만은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 활동가인 내가 앉아 있고 몇 달째 같은 테이블에서 회의를 해 왔던 만큼 그 사실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 단체 활동가 한 명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성소수자들이 부딪치는 어려움들에 대해 얘기를 듣기는 들어 왔지만 그래도 나는 그 문제들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냐는 것인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해 줘야지, 나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있고 남녀차별 문제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잘 모를 것 같아요.’

‘실체를 모르겠다’, ‘추상적이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사람 앞에서

일순간 나는 내 존재가 깡그리 무시되는 느낌을 받았었다. 피와 살을 가진 내가 내 입을 열어 나와 우리가 직면해와야만 했던 곤란한 상황들, 어려운 경우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추상적’이라고 하니, 정말 무엇을 더 어떻게 설명해 내라는 말인가?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을 기준으로 상정하고 만들어진 신분 등록의 형식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비정상의 범주로 엮어버린다는 건 정말 문제이다, 신분 등록표의 포맷 자체가 이미 무엇이 정상인가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포맷이 좀 더 바람직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보니 정말 더욱 어이없기 짹이 없었다.

혈연 가족 그리고 레즈비언

모든 레즈비언이 자기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성장한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시설에서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혈연 관계가 아닌 이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아주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홀로 생계를 일구어나가는 사람 역시 실제로 상당수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소위 혈연 가족, 즉 ‘혈연’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독히 밀착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의 레즈비언은 어떠한 경험들을 할까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청소년 기에서부터 결혼 적령기 어름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성애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코드들뿐이다. 학교 교육, 방송 프로그램, 가정 교육 등은 일상을 이성애적 뉘앙스를 띤 장면들로 촘촘히 엮어낸다. 어떤 편파적인 정상성에 대해 강제를 받는다는 느낌도 없이 은연중에 매우 강력하게 불들어 매어지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이들도 꽤 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십대의 나이대를 거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성정체성도 개인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교과서는 그러한 시기를 ‘2차 성징이 발현되고 이성에 눈뜨는 시기’라고 보통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성에 눈뜨는 경험’을 할 때 ‘동성에 눈뜨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가치판단이 개입될 문제가 아니다. ‘이성에 눈뜨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 만큼이나 ‘동성에 눈뜨는 경험’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은 아주 쉽게 ‘부자연스러운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것’, ‘비정상적이고 해악적인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궁정하는데 그야말로 악영향을 미친다. ‘나만 이상한 것 같은 기분’이 건강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좋아하는 동성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를 가족에게 들켜 소중한 관계를 난도질 당하고 또 벌을 받는다거나, 동성과 교제하는 것을 학교에 ‘발각’되어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학습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은 항상 비일비재하다. 처벌의 명목은 정확히 ‘동성애’가 아닐 수 있으나 처벌의 결정적 매개가 되는 것이 ‘동성애’인 경우는 허다하다.

부모들은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딸의 지원 세력이 되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썩부터 잘라버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가혹하게 굴 뿐이다.

“왜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니. 평범하게 살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네가 이 모양으로 태어나다니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남자애들과 잘 지내야 한다. 남자애들과 친해 놔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그게 힘이 되는거야.”

이와 같은 말들이, 구체적인 표현은 약간씩 다를지언정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말들이다. 딸이 성정체성을 드러냈건 아니면 ‘의혹’의 여지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건 상관없이 부모들은 저러하다. 그러면서, 딸의 소지품들을 감시하기 시작한다. 자기들이 ‘단서’라고 생각할 법한 것이 발견되면 아이를 잡는다. 이것은 극심한 사생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름을 빙 폭력이다. 사실 부모도 두려울 것이다. 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배타적인가를 수십년 체험해 온 이들이기에 자신들의 딸이 안정 궤도로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교정’하고자 급급 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다. 그렇지만 그건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는 정말 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려면 이 가족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숨이 막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수시로 스쳐간다. 성인이 되어서는 그러한 소망이 더욱 강렬해진다. 점차 이성 결혼의 압박이 드세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 원하는 활동에 제약이 너무 심할 것이기에. 그렇다고 내 멋대로 했다가(보란 듯이 동성 애인과 동거에 들어간다거나, 성소수자 인권 운동 판에 뛰어 든다거나, 관련된 작품 활동을 설명으로 한다거나 등등)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관련 있는 친지들 혹은 친구들 등의 등쌀에 부모가 고통스러워지는 상황도 생길 것이기에. 차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할 정도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

어렵게 혈연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치자. 그 다음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레즈비언 아니라 누구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독립은 필수적인 일이겠지만 기존 결혼제도에 편입해 들어갈 수 없는 레즈비언, 즉 ‘결혼’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돼 있는 존재,의 경우 경제적 독립은 보다 절박한 문제가 된다. 혼자 살건 파트너와 함께 살건, 이건 모든 측면에서 궁지에 몰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성애자 독신 여성과 레즈비언 여성의 처한 상황도 많이 다르다. ‘결혼을 해야 제대로 된 어른이다’라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결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등이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겠지만, 성정체성의 차이는 그 무게 이상으로 이 두 존재가 맞닥뜨리는 상황의 간극을 만들어낸다. 이성애자 독신 여성은 당당하게 자신은 독신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생활력만 갖출 수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레즈비언은 다르다. 홀로이건 파트너와 함께 이건 그저 독신인 것처럼 꾸며내야 한다. 항상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마당에 그런 거짓말 하나 보탠다고 해서 뭐가 더 힘든가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을 들이면서 노심초사

하는 것 자체가 레즈비언에게는 제약이 된다. 파트너와 동거라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관계를 지지받고 지원받기는커녕 그 관계가 단지 룸메이트 관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주변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이다. 경제 생활의 한 방편으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것일 뿐이라고 나름대로 강변해야 하는 것.

드러내지 못함. 바로 그게 문제이다. 수년을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온 동성 커플은 그 때까지도 그저 친한 룸메이트로 인식될 뿐이다. 깊은 우정으로 그러한 시간을 같이 보내올 수 있었던 것으로만 보여질 뿐이다. 가족들에게 파트너를 소개시킬 수 없다. 내가 험한 일을 당하는 건 몰라도 파트너가 고생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마 둘 다 정신 빠진 인간 취급만 당하고 쫓겨나듯 뒤돌아 나와야 할 것이다. 친구들이 속속 이성 결혼을 한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전낸다. 거둘 수 없는 투자를 하는 꼴이다. 그런 상황은 거듭된다.

이성 간 결합만이 권장되기에 그리고 여전히 이 사회는 동성애 혐오라는 편견의 굴레에 꽁꽁 얹매여 있기에 부부 같은 레즈비언 커플은 조용히 둘만의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 강구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항상 예비하며,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담당자 앞에서 상속 공증 문서에 도장을 찍으려 어려운 걸음을 한다.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하소연을 할 수만 있는 분위기라면, 어쩌면 자그마한 제도적 보장이라도 마련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위기와 제도 마련은 긴밀하게 엮여 돌아간다. 현재까지 각종 세제 혜택, 보험 혜택 등으로부터의 소외와 관계망 안에서 인정받지 못함은 생활의 전 영역에서 레즈비언 커플을 고립시켜 왔다. 이는 레즈비언들이 떳떳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위하여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찾기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기사 한 편을 전문 인용한다. 이후 논의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써 참고할 만 하다.

동성애자가 무슨 ‘결혼’?

동성커플 ‘법적 권리’에 관심 가져야하는 이유

금오해령 기자

2003-08-27 22:43:14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은 변태거나 비정상이며, 따라서 동성결혼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허다하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할지라도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의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성 해방의 대표적인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는 동성커플이, 왜 그 오래되고 말도 많은 ‘결혼제도’에 편입하려고 하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동성애자들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면서 법이 동성애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이외의 의의를 찾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이 상징하는 억압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성애를 행위에 초점을 두거나 동성애자를 일괄적으로 성적

자유주의자로 간주하는 단편적인 이해도 그들의 삶과 관련된 법 제도에 대한 관심을 낮추기도 한다.

‘현실’을 살아갈 권리

그러나 ‘동성간 결혼’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초점은 단지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해둘 것은 이것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따내서 가까스로 ‘정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도 현실의 삶을 함께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환상을 한 껏풀 벗기고 나면 결혼 역시 재산과 (성을 포함한) 생활을 공유하는 두 사람 사이의 하나의 법적 계약이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은 계약이다. 제도 결혼은 세금, 연금, 보험 등에서의 혜택에서 시작해서 재산분할, 상속, 입양 등의 권리 그리고 병원이나 감옥 면회, 신원보증 등의 생활적인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거하는 동성커플에게 이는 지극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다. 합법적인 ‘결혼’의 타이틀을 얻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다. 동성커플이 여타의 법적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영화 <더 월2>에서 보여졌듯이 병원면회조차 거부당하고 배우자 사망 후 가족들에 의해 수십 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 전 한국의 소송에서 드러났고(수십 년의 동거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레즈비언의 소송. 사실혼 관계 인정 없이 일부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짐) 오스트리아에서 역시 게이배우자 사망 후 같은 상황이 벌어져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가족으로 인정 받는 법제도적 혜택을 포기한다고 치더라도 유연장을 합의 하에 작성해두거나 함께 모은 재산은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록, 보험 금수취인을 사실상의 배우자로 지정하는 등 크고 작게 기존의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법적 인식 전환을 위한 논의 시급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하나는 이러한 기존의 법을 ‘굳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성애자 부부들조차도 ‘믿고 사랑하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공동명의 기재를 꺼리거나 극단적인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드물다. (예를 들어 이성애자 부부 이혼 시, 주로 통계에 잡히는 노동을 한데다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 둔 ‘가부장’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독점하는 경우들이 결코 드물지 않은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 동성애자들이 그러한 법 지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무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한 단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장년층 레즈비언들을 대상으로 재산공유와 노후대책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 법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가부장, 피부양인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상정한 법들은 그간 여성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부여해왔다. 동시에 그것은 ‘이성애적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이나 동거커플의 존재와 특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

다. 성소수자에 대한 무시와 무지를 깨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인식 전환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다.

동성커플 존재와 권리 인정이 중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그에 기반한 법적 권리의 인정을 꼭 '결혼'이라고 명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새로운 가족 형태들을 기존의 가족형태에 똑 같은 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이미 동성 간 파트너쉽과 이성 간 동거커플의 법적 권리인정이 진행되고 있는 서구국가들은 그것을 '동성결혼' (네덜란드, 벨기에 등), 등록된 '파트너쉽' (스웨덴, 핀란드 등) 혹은 '시민연대계약-파스' (프랑스)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 파트너쉽을 인정하는 방식 역시 다르고 인정하는 권리의 수위도 다르다. 예를 들어 그러한 법 제정이 진행 중인 영국에서 여성과 평등(Women & Equality Unit)이라는 단체는 동성 간 파트너 등록 시 이민과 영주권 문제, 선거에 출마한 동성 배우자에 대한 선거운동 참여의 합법화 등 우리의 시각에서 비교적 높은 수위의 요구를 담은 틀을 제시했다. 법적 인식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동성커플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어떤 권리를 요구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대선, 한 단체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을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동성결혼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왔다. 동성간 '결혼'이 동성애자의 현실 곳곳 '실제적인' 차별과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러한 답변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결혼이 되냐, 안되냐'를 결정하기 보다 법이 동성애자, 그리고 동성커플에게 차별적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 www.ildaro.com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나가며

지금까지 레즈비언들의 경험은 모든 영역에서 삭제돼왔다. 우리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들은 그야말로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말이다. 그런 것들을 정련해 나가고 실제 존재하는 욕구들에 대해 꾸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법제도의 마련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 위한 노력 역시 계울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실제로 바뀌는 건 없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라는 것을 가족 중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분주하고 지치는데 그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나 비추어지는 것, 그런 것들로 마음 시린 일이 점점 덜 해 질 수 있을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격려의 말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뿌듯해 질 수 있는 날이 올까? 모르는 일이다.

배제되는 가족, 혼혈인 가족의 삶

한영희 (두레방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원)

1. 문제제기

가족내의 권력의 차이와 이를 둘러싼 관계의 문제는 비판적인 가족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다. 바로 가족의 현실을 중심으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가족은 사회에 기여하는 기능성에 의해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화의 역할을 통해 사회를 재생산시키는 수단이면서 사회의 불균형적인 역할과 권력을 재생산시키는 연계지점이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을 접함에 있어서 그 사회적 기능성 여부를 조심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은 늘 사회에 순기능적이기만 한가? 만일 가족이 사회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가운데 형성되었고 사회통합에 있어 순기능적이지 못하다면, 이 불온한 ‘가족’에 내려지는 형벌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의 소수 가족인 혼혈인 가족의 문제를 통해 사회와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동안 혼혈인 문제를 가족의 입장에서 접근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혼혈인 문제와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별개인 양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중첩되어 있는 특징들을 보인다. 혼혈인과 기지촌 여성에게 가해지는 민족과 인종, 섹슈얼리티⁹⁾의 문제는 모두 ‘기지촌’이라는 지역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파생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을 지닌 차별의 주요 기제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여성과 혼혈인 각각에게 작동되는 차별은 대를 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촌 여성과 혼혈인을 아우르는 혼혈인 가족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혼혈인 문제와 기지촌 여성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또한 여성과 혼혈인들이 한국사회의 차별의 기제에 어떠한 대응양식을 취하는지를 가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 역시 이들에게 가해지는 중요한 차별의 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이 사회에서 갖게 되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혼혈인 가족의 형성 : 미혼모 가족의 형성

9)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을 창조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방향짓는 사회적인 과정(humm, 1990: 재인용)으로 이해되며 또한 단지 성기성적 행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개인적 사회적 삶의 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적 의미를 갖는 모든 태도, 가치, 믿음, 행동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매우 사회 문화적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다. 계급에 따른 섹슈얼리티, 성별에 따른 섹슈얼리티, 인종에 따른 섹슈얼리티가 있고 투쟁의 섹슈얼리티, 선택의 섹슈얼리티가 있다.(Weeks, 1986) 이러한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지촌 여성과 혼혈자녀의 논의로 가져가면, 기지촌 여성은 성애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와 미군의 인식, 그리고 혼혈자녀에게는 다른 인종을 성애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 등을 의미한다.

흔혈인 가족은 기지촌 여성의 아이를 출산하면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기지촌에서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고 했던 여성들이 왜 아이를 출산하였는가?

기지촌은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과는 분리되어 있다.¹⁰⁾ 이 공간은 전적으로 미군과 성매매여성을 위한 지역으로, 성매매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자신의 미모와 젊음을 과장되게 꾸미고 포장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매매에 접근 가능한 여성의 연령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¹¹⁾ 물론 나이가 들어 기지촌 지역 주변에서 잡일을 하며(성매매 포함) 생활을 하는 나이 든 기지촌 여성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자신의 미래를 다르게 구상했다. 당연히 여성들은 자신의 성과 외모를 판매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했다. 가능한 대안은 미군과의 결혼이었다. 한국사회의 순결이데올로기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여성들은 애초부터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포기하였고 미군만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여성들은 미군과의 결혼을 꿈꾸며 기지촌 지역을 벗어나길 희망했다.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하고 생활하고 싶어했다.

미군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혼남성이 주를 이루었고, 가족과 떨어진 머나먼 타향에서 되도록 가족과 같은 환경 속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이루어진 계약동거는 기지촌에서는 일반적인 성매매 형태가 되었다. 동거기간동안 임신은 자연스러웠고 대부분 아이를 지우지 못하면 낳았다. 여성들은 미군과의 결혼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 가운데 소수는 결혼에 이르기도 했지만¹²⁾, 대부분은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도 전에, 더러는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한국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남겨진 미혼의 어머니와 혼혈인 자녀는 미혼모 가족만을 형성하게 될 뿐이었다.

3. 부정되는 가족

10) 기지촌은 외국인 전용술집인 클럽들과 미군, 기지촌 여성들, 미군부대 PX에서 흘러나온 외제 품 판매점, 달러 상, 포주, 그리고 미용실, 세탁소, 양복점, 양품점, 사진관, 기념품점, 초상화점, 당구장, 의류점, 모포점, 국제결혼증계업 사무소 등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하나의 독립적인 혹은 격리된 마을이었다.

11) 물론 기지촌에서 가능한 성매매는 단지 젊고 예쁜 여성들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꽃파는 할머니와 같이 나이가 든 여성들을 상대로한 성매매도 발생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성매매를 제외하면, 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산업형 성매매)는 대개 젊음과 미모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12) 미군과 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도 미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성들은 역시 아이와 남겨친 채로 한국을 떠난 미군을 기다렸다. 미군은 미국으로 부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실제 아이와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난 경우는 드물었다.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는 깨어졌다. 기지촌 여성들에 의하면 결혼한 미군이 미국에서 아내의 실종신고를 하면 몇 개월 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실종신고통지서가 한국에 우편으로 발송되기도 했는데 여성들은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고 알았다 해도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상당수 이혼하게 되었다.

미혼인 기지촌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대부분 혼혈자녀를 입양보냈다. 미군이 떠나버리고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에¹³⁾ 다시 성매매로 돈을 벌어야 했고 이 상황에서 아이는 어머니에게 결림돌이 되었다.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마저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¹⁴⁾ 혼혈인 가족은 의도하지 않게 형성된 가족이었고 유지되기도 어려웠다. 아이를 출산한 기지촌 여성의 선택은 두 가지였다. 입양을 보내거나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하고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과정 모두 어머니인 기지촌 여성과 혼혈자녀에게는 가혹한 것이었다. 자녀를 입양보내는 경우, 어머니는 친권포기각서를 입양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친권포기각서에서는 어머니의 환경이 얼마나 아이에게 위해한지를 입증해야 했다. 기지촌 여성인 어머니는 부도덕하며 자녀에게 불안한 환경인지가 구체적으로, 과장되게 그려졌다. 미군과 결혼을 했던 여성들이 떠난 남편을 기다릴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이혼을 하는 정도도 마찬 가지였다. 이혼과 동시에 자녀포기각서를 쓰는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아내인지를 입증하여야 했으며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어머니인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삶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과장되게 포기하여야만 가능하였다. 애초에 기지촌 여성과 아내와 어머니는 한 여성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위치가 아니었다.

기지촌 여성이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상황인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 여성들은 낯선 경험을 해야했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승계는 아버지만이 가능하였고 가족은 아버지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가 없었다.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남자 형제나 아버지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와 혼혈자녀는 문서상 동거인 관계만이 가능하였다. 어머니가 자신의 친정가족과 친인척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버린 상황에서는 입적 자체는 불가하였다. 이럴 경우 자녀는 고아로 일가창립을 해야했다. 이렇게 실제의 기지촌 여성과 그녀의 혼혈자녀로 이루어진 혼혈인 가족은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녀를 떠나보내든지 아니면 함께 살든지 어떤 선택을 하건 혼혈인 가족은 해체되었다. 자녀를 입양보내어 실질적으로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면 실제 가족관계를 부모자녀관계가 아닌 관계로 공식화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가족을 구성할 수 없었으며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인정받을 수 없었다.

1980년부터 혼혈인들은 어머니의 호적에 자녀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호적의 아버지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공란은 법적으로는 한국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으로 낙인을 찍는 것으로 아버지 없는 불완전한 가족임을 드러내주는 표시였다.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정을 떼지 못하고 함께

13) 계약동거시에는 화대를 생활비 형식으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따로 성매매를 할 필요가 없었다.

14) 아이들은 대개 유모에게 맡겨지거나 외가친척에 의해 길러졌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살기를 결정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가족을 구성하였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혈인 가족의 출발점이었다.

4. 차별받는 가족

한국사회에서 기지촌 여성들은 모두 ‘양공주’, ‘양색시’라 불리우며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이들은 이미 순결이데올로기를 거부한 사람들로서 부계혈통승계를 통해 조신하게 대를 이어 가야 하는 여성들의 역할 밖의 존재이다. 그리고 남성의 권위와 보호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대우는 받을 수도 없으며 성매매를 하면서도 다른 민족과 인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성 가운데 최하층민에 가까운 사회적 질타와 멸시를 받았다. 이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낙인은 바로 ‘양(洋)’이다. ‘양공주’와 ‘양색시’의 ‘양(洋)’의 의미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게 귀속되는 한국적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 기지촌 여성들은 기지촌 지역에 유입되어 생계를 이으면서부터 한국인이 아닌 다른 인종과 민족으로 대비되었고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례로 기지촌 여성들이 일을 하는 기지촌 외국인 전용 클럽에는 ‘내국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이 표지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지촌 여성들은 ‘내국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지판이 규정하는 내국인은 바로 ‘한국인 남성’이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한국의 국적은 부계혈통을 근간으로 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혈통의 정통성만이 인정되었고 이 가운데 여성의 지위는 단지 남성에 종속될 뿐이다. ‘양놈’을 상대하는 여성들은 부계혈통에 종속되어 ‘양’의 것이었고 당연히 한국인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국의 국적은 다른 인종과 민족을 타자화시키는 배타적 부계혈통주의에서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양(洋)’이 가진 의미의 꼬리표였다. 기지촌 여성은 ‘양(洋)부인’이란 낙인 외에도 다른 인종의 혼혈자녀를 낳음으로써 영원히 뗄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긴 셈이 되었다. 낙인은 혼혈자녀가 존재하고 어머니가 살아가는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혼혈자녀 역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철저히 배제되었다. 자신의 외모가 바로 혈통에 근간한 국적성을 위해하였다는 증거가 되었고 그로 인해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모순되게도 한국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혼혈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혼혈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성은 사회적·문화적으로 부정되었다. 1954년, 전쟁고아 및 혼혈고아의 입양을 위해서 한국아동양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의 전신)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한국 전쟁직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혼혈아에 대한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서였다. 당시 이승만은 “혼혈아는 아버지의 나라(미국/서구)에 보내 주도록” 지시하였다. 가부장적인 사고 하에서, 아버지가 다른 인종인 기지촌 혼혈인은 응당 외국사람이었다.¹⁵⁾ 외모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혼혈인들은 어머니에게 가해졌던 차별보다 더 직접적으로 타자화되고 회생되었다. 혼혈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튀기’, ‘양키’, ‘깜둥이’, ‘노랑머리’, ‘미국사람’, ‘외국사람’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모두 인종적 차이를 인정

15)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2003), p19.

하지 못하는 순혈 중심의 한국사회를 대변한다. 혼혈인 비하의 표현은 혼혈을 순혈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외모에 있어서 차이를 묘사하는 표현에서 비롯된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외모의 차이는 자신의 혈통을 드러내주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계혈통을 따르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인들은 한국사회의 정서적 단일민족주의를 해하는 존재이며, 단일민족 혈통의 정통성에 위배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혼혈인과 그(녀)를 낳은 어머니는 한국사회의 치부로 남성화된 국가로서는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혼혈인과 어머니는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이를 가족은 정당한 '가족'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가족'은 이미 부계에 의한 핏줄과 제도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성매매의 결과로 의도하지 않은 출산과 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다. 남성화된 국가는 이를 가족을 해체하여 섞여진 핏줄의 결과물인 혼혈인을 외국으로 보내고자 했다. 입양이 아니면 이민을 허용하여 이들을 외국으로 보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14세 이전의 어린 혼혈인들은 친권포기각서를 쓴 어머니와 떨어져 해외로 입양 보내졌으며 성인이 된 혼혈인들은 살기 어려운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유도됐다. 혼혈인 가족이 함께 살도록 하는 배려는 정책적으로 전무했고 단지 인종적 차이가 눈에 띠는 혼혈인을 내보내기에 바빴다. 많은 혼혈인들은 어머니와 떨어져 홀로 외국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땅을 등지고 떠났다.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기 위한 정부의 의도는 이와 같이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부적 삶을 살아야 했던 혼혈인들의 비애(悲哀)와 맞아떨어졌다. 한국정부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1982년 미국의 이민특례법에 의해 1951년생부터 1982년생의 혼혈인들에 한해 이민이 허용되었다.¹⁶⁾ 상당수의 혼혈인들은 해외로 출국했고, 살길을 찾아갔지만 이미 한국사회에서 성인이 되어 버린 혼혈인들이 모두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지에서 다시 적응해야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출국을 포기하고 한국에 살기를 결심한 이들도 있었다. 현재까지 한국에 잔류하는 혼혈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생활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들이다.

인종과 민족에 있어서의 한국사회의 배타성 외에 혼혈인 가족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또 다른 기제는 섹슈얼리티의 문제이다. 혼혈자녀의 어머니가 기지촌 출신의 여성이라는 점은 혼혈인과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회적 낙인이 되었다. 단지 기지촌 출신이 아니라 강간과 같은 미군범죄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그들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 다른 인종을 상대하였던 여자라는 점 때문이다. 씨를 알 수 없는 자식이란 낙인은 자식을 낳은 어머니, 즉 여성에게 전가되었다. 부계혈통을 훼손하며 여성으로서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탓에 씨를 모르는 자식을 낳은 것이라는 낙인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16) 1982년 8월 22일 미국 의회는 아시아 지역 혼혈아들에게 미국 이민의 특혜를 부여하는 법을 가결시켰다.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 내 혼혈인들에게 이민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이 통과되었다. 이민법은 1950년 이후 출생자부터 법안이 개정된 1982년 출생자까지 아버지가 미국시민이란 근거가 있고 일정기간동안(5년간) 미국인으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으면 아시아 지역의 혼혈인들의 미국이민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어머니에 대한 낙인은 바로 씨를 알 수 없는 자식에게도 전가된다. ‘호로자식’과 같은 표현은 바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된다. 실제 여성인 혼혈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딸이 성매매 여성으로 보일까봐 무척이나 염려하고 있었다. 어머니인 자신에 대한 낙인이 딸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¹⁷⁾

여성(어머니)의 섹슈얼리티 문제뿐 아니라 서구적인 외모의 혼혈인 자녀의 섹슈얼리티 역시 문제가 되었다.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성(性)은 남성의 전유물이다. 한국남성에 의해 성은 늘 모험이고 무용담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혼혈인들은 이러한 남성적 성문화에서 새롭고 특이한 모험의 일부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혼혈인들의 눈에 띄는 외모는 쉽게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늘 성폭력과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의 위험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과도한 남성성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 성애적 대상은 굳이 여성일 필요가 없었다.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한국사회의 ‘정상성’을 인정받은 주류 남성의 위치에 있지 않은 존재는 누구나 성적으로 도구화될 수 있었다. 혼혈인들은 남성과 여성이기 이전에 ‘정상적인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않은 존재였고 한국사회에서 낯선 외모를 한 존재로 성적 모험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 성희롱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성폭력도 남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혼혈인 가족의 구성원인 어머니와 혼혈인 자녀는 모두 자신을 둘러싼 차별의 기제로부터 철저히 폭력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혼혈인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일련의 생애과정에서 차별의 경험은 늘 따라다녔다.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소외, 취업기회의 제한과 차별, 직장에서의 시선과 따돌림, 결혼 반대, 심지어는 길거리의 은근한 시선 등 외모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차이는 혼혈인들의 삶 곳곳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어머니 역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평생 일을 해야했고 혼혈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평생을 고개 숙이며 따돌림받으며 살아야 했다. 혼혈인의 경우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나를 놀리거나 때리고 욕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새로운 관계와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다. 정상적인 관계맺기는 어려웠고 관계 맺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되도록 최소한으로 상처받을 준비를 하였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의 아들, 딸이 차별받는 것이 나 때문은 아닐까’ 고민하면서 철저하게 혼자인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자식이 집밖을 나갔다가 ‘너네 엄마 양색시지?’라는 놀림에 자식뿐 아니라 어머니 역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반복되고 일상적인 차별경험은 개인에게 내재화되었고, 혼혈인과 어머니는 스스로 자신을 외부로부터 거리두기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성인이 된 혼혈자녀를 둔 어머니가 일을 하지 못하면서도 아직까지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기지촌 밖을 벗어날 수 없어서’, ‘딸이 눈에 띄기 때문에’였다. 유일하게 혼혈인 가족이 터득해낸 삶의 방식은 되도록 숨어사는 것이었다. 우리가 익숙한 공간 어느 한

17) 어머니의 섹슈얼리티는 혼혈인 자녀에게 민감한 문제인 것으로 보였다. 많은 혼혈인들은 자신에 대한 차별보다 어머니를 일컫는 비하적인 표현을 더 가슴 아파하였다.

곳의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관계망만을 가지고 배제된 채 살아가는 속에 혼혈인 가족의 모습이 있었다.

5. 혼혈인 가족의 대응방식

혼혈인 가족의 가족관계는 상당히 좋다. 대개의 혼혈인 가족은 흘어머니와 혼혈자녀로 이루어지거나 아버지가 다른 혼혈자녀 형제로 이루어져 있다.¹⁸⁾ 자녀가 결혼하여 혼혈인2세가족을 이루기전에는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특별한 친인척관계는 없이 혼혈인 가족구성원끼리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가족관계 중 혼혈인들은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다. 오히려 정상가족이라 불리는 일반 가정과 눈에 띠는 차이점은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혼혈인 가족은 외부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한 대응을 가족관계를 통해 해소하고 있었다. 유일한 정서적 지지망을 가족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혼혈인 자녀가 출생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가족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갈등은 크게 작용하기도 하며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머니는 성매매를 지속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양육과 생계의 문제에서 늘 갈등을 하게 된다. 자녀에 대한 입양을 고려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의심하고 갈등하는 것이다. 자녀를 두고 기지촌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미군과 동거를 하기도 어려웠으며, 미군과의 결혼을 꿈꾸는 것 또한 포기해야 했다. 성매매여성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혼혈자녀를 흘로 기르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지만 혼혈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자신에게 가해지는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상황은 늘 답답하기만하다.

자녀의 입장에서 기지촌 여성은 어머니로 두었다는 것은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어머니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면 자녀는 혼자 방치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단칸방에 어머니가 성매매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알콜중독증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머니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폭력적으로 행사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가족관계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모자관계는 누구보다 원만하다. 더구나 혼혈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들 관계는 더욱 좋아진다. 자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어머니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며 어머니 역시 외로운 자신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자녀에 대해 든든함을 느끼게 된다. 혼혈인 가족의 모자관계는 정상 가족과는 달리 갈등보다는 이해와 위로가 쌓이는 관계가 된다. 이는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상처와 폭력적 경험에 대한 위로를 가족내에서 찾기 때문이다. ‘만약 내

18) 기지촌 여성은 혼혈자녀와 남겨진 채 다른 미군을 만나 동거를 하는 동안 아버지가 다른 혼혈자녀를 또 낳게 되면 혼혈자녀로 이루어진 형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역시 미군이 떠나게 되면 남겨진 혼혈자녀 형제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미혼모 가족을 이루게 된다.

게 어머니가 없다면’, ‘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면’하는 가정은 차별속에서 현재 가족을 이루며 생활하는 혼혈인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은 가족내부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6. 결론 : 차별적 사회로부터 혼혈인 가족이 가지는 의미

혼혈인 가족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혈연과 제도를 기반으로 사랑을 통해 형성된 가족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미군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갖기를 희망하였지만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 기지촌 여성의 자녀의 출산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동거인 관계의 가족, 아버지 없는 미혼모 가족만을 형성하였다. 끊임없이 혼혈인 가족은 갈등상황을 맞이하였고, 불안하게 유지되었다. 애초에 ‘가족’과 어머니 역할은 기지촌 여성에게 당치 않은 것이었다. ‘가족’과 어머니 역할은 사회가 허용하는 부계혈통승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단일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부계혈통중심의 가족구성이 이루지 못했던 혼혈인 가족은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받고 통제되었다. 혼혈인 가족은 혈통에 기반한 단일민족의 국가정통성을 확보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문제였을 뿐 ‘가족’이 아니었다. 사회의 차별은 냉혹했다. 씨를 알 수 없는 혼혈인 가족은 다른 인종을 상대한 여성들의 죄의 결과물이며 민족적 수치심일 뿐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혼혈인들을 내보내야 했고 이것이 혼혈인을 위하는 길이며 혼혈인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선언하였다. 사회에 순기능적이지 못한 혼혈인 가족은 철저히 주변화되었다. 그리고 1982년 이민특례법으로 혼혈인들이 해외로 이민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남과 동시에 혼혈인 가족의 문제는 사장되었다.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듯 했다. 그러나 가족을 포기하고 떠나지 못한 혼혈인들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잔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혈인 가족을 둘러싼 혈통을 근간으로 한 민족과 인종, 세슈얼리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혼혈인 가족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의 차별은 오히려 가족 내부의 관계를 강화시켰고 공고화되었다. 사회로부터의 보호막을 가족을 통해 형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차별에 대한 가족적 대응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아있다.¹⁹⁾ 가족의 지위는 단지 사회가 인정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만 부여받을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가족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소수자로서의 삶에서 유일한 지지대가 되기도 한다. 오히려 가족의 본질이 소수자의 가족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외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더 강고한 가족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예를 볼 때 일반적인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현실 속의 다양한 삶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제한적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한 국가와 사회가 규정하는 틀 속에 갇혀진 단위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은 단지 사회에 기능적이기 때문에 유의

19)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독거상태의 혼혈인 수 역시 많다. 그러나 독거상태의 혼혈인들은 가족이 있는 혼혈인보다 더 많은 사회적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과 부모로부터의 벼랑받았다는 기억은 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의 지지망 유무는 혼혈인들의 생애에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미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삶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혼혈인과 기
지촌 여성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존재이지만 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
는 가족의 정상성에 포함되지 못하지만 가족구성원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었
다.

[사례발표] 외국인과 산다는 것, 세상을 향한 빗장을 여는 것.

이강전(필리핀가정모임 회장)

97년 4월,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건 잘못 걸려온 전화였다. 한 달 후,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5월3일,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그의 첫 인상은 자상해 보였고, 웬지 오래 전에 만났던 것처럼 포근하고 편안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일주일에 두 번을 만났다. 그렇게 5개월, 우린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외국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 사이 98년 5월, 임신. 임신 초기는 주위에 알리지도 못하고 심한 입덧으로 너무 힘들었다. 입덧이 끝나고 나니 이번엔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기진통이 와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8개월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조기진통은 곧 출산으로 이어져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한달 반이나 약과 주사로 아기를 배속에서 키워야만 했다. 그리고 99년 1월 25일, 예정일보다 16일이나 빨리 출산했다. 내가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아기를 보는 순간, 왜일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저녁에 남편이 왔다. 남편도 아기를 보자 눈시울을 적셨다.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났다. 99년 5월 19일, 남편과 같이 필리핀으로 갔다. 필리핀 아키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위는 뿐연 담배연기가 가득했다. 남편의 고향은 마닐라에서 버스로 꼬박 10시간을 달려 가야한다. 숨 쉬기조차 힘든 탁한 공기와 낯선 곳에서 장거리 여행이 무서웠다. 두 달 반의 필리핀 생활이 시작이다! 외국사람인 나에게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했다. 무서운 일도 있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 무섭지 않았다. 7월 11일, 남편의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국 땅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쓸쓸했다. 7월 중순경,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린 아들을 홀로 데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서 그저 내 처지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11월 6일,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 또다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탔다. 아키노 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수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남편의 여권이 위조이라며 필리핀 출입국에서 출국을 못하게 했다. 여권 만드는 시간을 좀 줄여보겠다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만들 여권이 위조라니! 온 몸에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남편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설레임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 기나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온통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편지 쓰기를 싫어하는 난 12월 24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편지를 보냈고, 남편은 다훈이 첫 돌엔 꼭 같이 있겠다며 2000년 1월 17일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이 규제되었다. 이번엔 위명이란다!! 위명이 뭔지 모른다. 남편을 만나야만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포공항에서 6시간. 6시간동안 남편을 만나기 위해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실과 실랑이를 벌렸다. 11시 30분 경 남편을 만났다. 30초간이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울까지 와서 남편을 그냥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돌려보낼 순 없다.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조사과 직원은 입국심사과 직원이 퇴근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찾아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첫 비행기가 도착하는 6시 30분 다시 김포공항으로 갔다. 입국심사과에서는 남편의 입국심사를 담당한 직원이 비번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하루 밤 사이에 말이 바뀌었다. 아침에 오면 확인할 수 있다더니….

남편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간 다음, 난 남편의 여권이 위명여권으로 둔갑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결론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남편 여권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 번호가 없다는 것이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가족비자(90일 비자)을 주면서 왜 법무부 장관의 승인번호를 누락시켰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된다.

지난 만 16개월간 남편을 기다리며 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새로운 이웃을 만났다. 새롭게 만난 이웃, K-P Family 친구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키워갈 것을 다짐해 본다.

* 이 글은 2000년 3월 필리핀가정모임회보 “희망의 속삭임”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국제결혼가정차별실태와 해소를 위한 활동들

최진영(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조직국장)

현대를 이동의 시대라고 한다.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특히 값싼 노동력을 찾는 자본의 운동은 대규모의 이주노동자를 발생시켰다. 한국도 80년대 후반 이후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국제결혼도 늘고 있다. 2002년 3월 통계청의 집계에 의하면 2001년 국제결혼 수는 15,234건으로 결혼 총 건수의 4.8%로 해당되며 이중에서 중국(7,001건) 필리핀(510건), 태국(185건), 러시아(157건), 베트남(134건), 몽골(118건), 파키스탄(64건) 등 한국으로 노동력을 송출하고 있는 나라의 이주노동자와의 결혼이 50%가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국제결혼 수는 2000년(12,319건) 기준으로 볼 때 무려 23.7%가 증가한 것이었다.

굳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빌지 않더라도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국제결혼가정 중에서도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사회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차별과 냉대를 받은 경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이 겪은 차별의 실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그간의 과정들을 살펴보자 한다.

1. 제도적인 차별과 대응

(1) 부계혈통주의의 국적법의 위헌성 제기

국제결혼가정문제는 96년 자녀의 국적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국인의 자녀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국적법에 대한 불합리적인 요소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며 마침 여성계에서도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의 조항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과 함께 국적법은 97년 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부와 모의 양국적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적법의 개정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게 된 국제결혼가정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가정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의 지원없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도 못하고 동거가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인신고도 혼인서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혼인서약서는 남편의 나라에서 보내오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서류에는 여성단독세대로 기록되어 있다.

국적법의 개정으로 국제결혼가정은 가정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그에 앞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산을 넘어야 했다. 남편과 함께 출국하여 남편의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가족방문비자를 받아 남편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출국비용과 체류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불법체류로 있었던 남편이 혼인신고 후 재입국이 가능할 것인가는 문제였다. 당시 불법체류자는 2-5년 동안 입국규제를 받게

되어 있어 국제결혼가정은 가정해체의 위기를 우려하게 되었다.

(2) 강제출국명령

98년 파키스탄 이주노동자가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 강제출국이유는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2살 된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 남편의 출국은 곧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었으며 입국 당시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의 고려없이 강제출국을 집행하려는 당국에 대해 국제결혼가정은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이주노동자가족대책협의회'(이하 가족대책협)를 구성, 집단적으로 대응하였다. 가족대책협은 입국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출국을 받아들였다.

(3)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비자확보

가족대책협은 강제추방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단기방문비자인 F1으로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남편이 취업을 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취업이 보장되는 비자로 전환을 요구하였다. 당국은 취업보장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제결혼가정들은 탄원서, 진정서를 제출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드디어 올해 4월 18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실시되어 국제결혼가정의 이주노동자에게 F1(단기방문비자)대신 F2(가족방문비자)를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한된 업종에서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F2 비자로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한다.

현재 국제결혼가정들은 F1에서 F2로 전환으로 남편의 취업이 합법화된 점을 반갑게 받아들이면서도 취업범위의 제한과 새롭게 대두된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국제결혼가정이 제외된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영주권 발급이 F2 비자로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즉 체류기간이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된다면 F1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한 국제결혼가정이 영주권 발급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놓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이주노동자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에 펴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품게 한다. 제도적인 차별은 곧바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명한 제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도적 차별은 체류자격의 제한을 두는 것 말고도 국적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상대인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등)본 상에 미혼가정으로 나타나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2.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형성

국적법의 개정 이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이하 성남의 집)이 중심이 되고 몇몇 단체의 지원으로 '지구촌사랑나눔터'(이하 지.사.나)가 결성되었으며 특히 성남의 집은 국제결혼가정지원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지.사.나가 "인종과 종교를 넘어선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나 몇몇 국적의 모임으로 한정되면서 지.사.나의 본래의 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99년 총회에서 국적별 소모임을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99년 한국여성과 필리핀남성이 결혼한 국제결혼가정모임(이하 케이.피.훼미리)이 이뤄졌다. 케이.피.훼미리 이외에도 몇몇 국제결혼가정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알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케이.피.훼미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필리핀국제결혼가정모임 결성

99년 지사나 총회를 통해 하부모임으로 국적별 소모임 구성을 결의한 후 필리핀국제결혼가정은 한국-필리핀가정(이하 가정모임)이라는 이름으로 99년 공동체 구성을 준비하여 2000년 1월 창립모임을 갖고 월 1회 정례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 회원은 24 가정이 가입해 있으며 정례모임에는 평균 10가정 정도 참여하고 있다.

(2) 모임을 통해 본 국제결혼가정의 과제

* 비자 취득과 연장 : 안정된 가정유지를 위한 선결과제였다.

초기에는 F1 비자취득과 체류연장에 대한 문의로 매번 월례회마다 새로운 가정들이 모임에 참여했다. 회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먼저 경험한 회원들은 비자취득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첫 2년 동안은 매번 모임에서 처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당했던 수모와 냉대의 경험, 비자연장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F1비자를 받기까지의 과정 등 과정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겪어낸 어려운 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비자취득은 안정된 가정유지를 위한 선결과제로 삼았다.

* 국적취득이 정상적인 가정의 대안? :

주민등록초(등)본에 미혼가정으로 나타나므로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오인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논의되었으나 남편이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는 학교분위기 때문에 학교행사에 남편과 동행한 적이 없다며 국적 취득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고민을 나누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건강한 부모상 갖기 :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경험이 다른 관계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훈련을 지난해 4월부터 10회에 걸쳐 실시다.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분석해서 표현하기,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무조건 수용하기,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감각 깨우치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 다른 문화 수용하기

올해는 월례모임의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다갈로그(필리핀 말) 배우기,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 이해하기, 국제결혼가정과 관련된 법률상식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겪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국제결혼가정의 과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주자로서 타국에 정착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제도적인 보호 장치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차별의식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맞서는 의연한 자세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의식 활동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실에 닥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는 원동력은 같은 처지에 있는 공동체 일원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모임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도 국제결혼가정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며 최소한 국내법이 국제결혼가정의 차별을 방기하거나 조장하지 못하도록 차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개선을 요구하여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 이 글은 '이주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한·일 공동포럼'(2002년 6월)에서 발표한 내용임.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는 2003년 3.8 여성의 날 무지개 시위를 시작으로 여성의 다름과 또 닮음을 이야기 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말하는 것은 개개의 여성이 처한 다른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성 정체성, 서로의 다른 장애의 조건, 서로의 다른 삶의 방식을 직시하고 다름을 말합니다. 비장애인 여성에 의한 장애여성 차별, 이성애자 여성에 의한 성소수자 여성 차별, 삶의 조건에 따른 여성간의 차별, 그것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다시 '닮음'을 말하는 것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작지만 큰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심으로 편입해서 권력에 의존하고, 권위적이며, '다름'을 묵살하는 운동방식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허물며 다름을 인정하고 긍정할 것입니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 나이 등에 기반한 '다름'으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전쟁과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에 저항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름'은 우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는 모든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우리들과 닮은 여성들과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장애여성공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후원안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홈페이지(dadam.org)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국민은행 545601-01-052489 나영정(다닮연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7-1 세종프라자빌딩 607호(134-070)

전화: 02)441-2392

팩스: 02)441-2328

홈페이지 dadam.org

E-mail dadam38@hanmail.net